



## 퇴직연금의 이해 (7):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

오병국 연구원

-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 제도, 퇴직급여우선변제 제도,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,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수급권보호 장치를 두고 있음.
- 최소적립금제도는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<sup>1)</sup> 제16조에 의해 확정급여(DB)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사내에 적립해야 하는 것을 말함.
  - 현행 근퇴법에서는 최소적립금을 기준책임준비금의 60%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.
    - 여기서 기준책임준비금은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또는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더 큰 금액임.
  - (적기시정 조치)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.
    - 만일,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함.
- 또한, 사용자인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연금지급 보증장치로서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,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,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음.
- (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) 근퇴법에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,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,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조세·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1) 이하에서는 '근퇴법'으로 통칭함.

-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됨.
- (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)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·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·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.
  -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함.
  -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은 기업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며,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결정함.
  - 퇴직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은 월별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.
- (예금자보호제도) 확정기여(DC)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분에 한하여 금융기관 도산 시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해 5,000만 원 한도로 자급보장이 이루어짐.

〈표 1〉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장치 비교

| 구분         | 보상범위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| 관련법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최소적립금제도    | 최소적립금 이내                 | 확정급여(DB)형              | 근퇴법 제16조    |
|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| 최종 3년분에 한정               | 퇴직급여 대상                | 근퇴법 제12조    |
|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| 최종 3년분에 한정,<br>월별 상한액 설정 | 임금·휴업수당 및<br>퇴직금       |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|
| 예금자보호제도    | 5,000만 원 한도              | 확정기여(DC)형,<br>개인형(IRP) | 예금자보호법      |